■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[별지 제26호서식] <개정 2021. 1. 21.>

군수품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 [ ] 신고서 [ ] 변경 신고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, [ 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
상호	대표자 성명
전화번호	팩스번호
E-mail	사업자등록번호
주소	

중개수수료 대상이 되는 외국기업과의 계약 사항	중개 또는 대리 행위를 하는 사업명
	외국기업명 (계약당사자의 서명)
	계약일자
	계약기간

중개수수료

※ 수수료율 또는 수수료 금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며, 수수료율 기재 시 수수료 계산을 할 수 있게 대상이 되는 방위사업청과 외국기업간 계약의 연차별 계약금액을 기재합니다.

① 수수료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

구분	총계	최초 수급연도	중간 수급연도				최종 수급연도
수수료							

② 수수료율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

구분	총계	최초 수급연도	중간 수급연도				최종 수급연도
수수료율							
계약금액							

중개수수료 지급시기 및 방법 ※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여백이 부족할 경우 별지로 첨부 가능합니다.

「방위사업법」 제57조의4제1항·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5제3항·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군수품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를 [ ] 신고 [ ] 변경신고 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방위사업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신고의 경우: 중개 또는 대리 행위에 관한 외국기업과의 중개수수료 계약서 사본 2. 변경신고의 경우: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	수수료 없 음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